

2021년도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공동모의고사

수험번호	
성명	

1책형

공 법

응시자 주의 사항

1. 시험 시작 전 문제지를 들추는 행위 등으로 문제 내용을 미리 보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 해당 과목은 영점 처리 됩니다.
 2. 시험 시작 즉시 문제지 표지에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수험생은 문제의 명시적·묵시적 지시사항에 따라 문항과 답항의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항만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4. 문제 내용에 관하여 질문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휴대용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등 전산기기를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 ※ 위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데 대한 책임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지 사 항

1.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정답이의신청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

공 법

문 1.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권리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장되지만, ‘연명치료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 ㄴ.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나,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ㄷ.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며,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사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스스로의 인격상을 형성하고 명예를 지켜온 그 후손의 인격권을 제한한다.
- ㄹ.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보호된다.
- ㅁ. 광장에서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만, 그 광장 주변을 출입하고 통행하는 개인의 행위는 거주이전의 자유로 보장될 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

- ① ㄴ, ㄱ ② ㄱ, ㄴ, ㄱ
③ ㄷ, ㄱ ④ ㄴ, ㄷ
⑤ ㄴ, ㄷ, ㄷ

문 2.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에 해당하나,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있는 성격의 의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되나,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 ③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법무부장관의 상신

(上申)을 통하여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시행한다.

- 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어야 한다.

문 3.

교육 관련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운영지원비 관련 세입조항은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②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 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의무교육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③ 의무취학시기를 만 6세가 된 다음날 이후의 학년 초로 규정하고 있던 구 「교육법」 조항에 따라, 만 6세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입학할 허용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국립교육대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⑤ 중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인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에 대하여 중학교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 4.

대한민국헌법의 역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1948년 제헌헌법은 ‘경제’의 장과 ‘재정’의 장을 별도로 둬으로써 경제와 재정의 의미를 강조하였으며,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되,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국가의 보충적 관여를 허용하고 있었다.
- ㄴ. 1960년 제2공화국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법관을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하였으며, 선거의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도록 하였다.
- ㄷ. 1962년 제3공화국헌법은 정당기속을 강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인하여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 ㄹ. 1972년 제4공화국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로써 대통령을 선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밖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

원을 선거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하고 있었다.

ㄱ. 1980년 제5공화국헌법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의 보장 등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새로이 규정하였다.

- ① ㄱ, ㄴ, ㄹ
- ② ㄴ, ㄷ, ㄹ, ㄱ
- ③ ㄱ, ㄷ, ㄹ, ㄱ
- ④ ㄷ, ㄹ, ㄱ
- ⑤ ㄱ, ㄴ, ㄷ, ㄹ, ㄱ

문 5.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어, 부 또는 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우리 국적을 상실했던 당시로 소급하여 국적이 회복된다.
- ㄷ.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본다.
- ㄹ. 아버지가 한국인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인정하는 반면, 아버지가 외국인이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자녀에게는 한국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ㄱ. 만 20세의 외국인인 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인지하는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① ㄴ, ㄹ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ㄷ, ㄹ, ㄱ

문 6.

국가배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생명·신체·재산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 ②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 ③ 국가에 대한 구상권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고 재산권의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하다.
- ④ 이중배상청구금지와 관련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⑤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장은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문 7.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작용에 있어서 취해지는 어떠한 조치나 선택된 수단은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
- ②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고 근본적인 자유는 더욱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제한은 더욱 엄격히 심사되어야 하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의 실현에 있어서 부차적이고 잉여적인 자유는 공익상의 이유로 보다 더 광범위한 제한이 가능하다.
- ③ 과잉금지원칙에서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이 의미하는 수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최상의 또는 최적의 수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족하다.
- ④ 재판청구권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⑤ 침해의 최소성의 관점에서, 입법자는 그가 의도하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본권을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공익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인 기본권 행사의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해야 한다.

문 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의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ㄴ. 국회에서의 증언에서 18세미만의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 ㄷ. 국정감사의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 ㄹ.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
- ㄱ. 우리 헌법에 국정조사권은 1980년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 ① ㄴ, ㄷ
- ② ㄱ, ㄹ, ㄱ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 ⑤ ㄴ, ㄷ, ㄱ

문 9.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②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는 중 좌석안전띠를 맬 것인가의 여부는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 심사는 배제되고 사생활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를 신청하는 국민에게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법률규정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재산권을 경합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사안에 보다 밀접하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계약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을 위주로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 ④ 기본권의 충돌은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 ⑤ 헌법재판소는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의 서열이론이나 법익형량의 원리에 입각하여 어느 기본권이 더 상위기본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문 10.

헌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문화국가원리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의 문화정책은 국가의 문화국가실현에 관한 적극적 지원을 감안할 때, 문화풍토의 조성이 아니라 특정 문화 그 자체의 산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② 헌법의 기본원리는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지배하는 지도원로서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해석 및 기본권제한입법의 합헌성 심사에도 있어 해석기준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 ③ 사회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이 신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더라도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는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④ 헌법 제34조 제5항의 ‘신체장애자’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조항은 사회국가원리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이 조항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하여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의 의무가 도출된다.
- ⑤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고, 법인의 경우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문 11.

감사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감사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구별하지 않고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감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원법」 규정은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감사위원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
- ㉣. 권력분립원칙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감사 및 직무감찰 대상에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이들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된다.
- ㉤.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은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 ①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ㄹ, ㅁ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문 12.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용자가 보내려는 모든 서신에 대한 무봉합 상태의 제출을 강제함으로써 수용자의 발송 서신 모두를 사실상 검열 가능한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은 수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의 허가를 전제로 2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총연장기간이나 총연장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 ① $\neg, \perp, \sqsubset, \sqsupset$ ② $\neg, \perp, \sqsupset$
 ③ $\perp, \sqsupset$ ④ $\perp, \sqsubset$
 ⑤ $\neg, \sqsupset$

문 13.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7. 정당은 정당법 제2조에 의한 정당의 개념표지 외에 독일의 정당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기간 또는 계속해서’,

‘상당한 지역에서’ 라는 개념표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 ㄴ. 정당법상 정당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등록취소 이후에는 정당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 ㄷ.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설립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헌법 제8조의 정신에 비추어,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은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의 중대성에 있어서 적어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반’에 버금가는 것이어야 한다.
- ㄹ. 정당설립의 자유는 정당 자체의 기본권이고 국민 개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므로 국민은 이를 근거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ㅁ. 정치자금법상 국고보조금 배분에 있어서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다수의익을 가지고 있는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ㅁ
- ④ ㄷ, ㅁ
- ⑤ ㄱ, ㄴ, ㄷ, ㅁ

문 14.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국회는 국회의원이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해당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 ㄴ. 국회의원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비록 발언 내용에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이상 해당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
- ㄷ.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한 경우에는 퇴직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이 있는 경우 그 정당 소속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은 상실되지 않는다.
- ㄹ. 국회의장은 정부의 의원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에 대하여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것은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ㅁ
- ④ ㄷ, ㅁ
- ⑤ ㄴ, ㄷ

문 15.

밑줄 친 부분 가운데 헌법의 전문(前文)과 다른 것만을 모두 묶은 것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 ㉤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① ㉠, ㉡
- ② ㉢, ㉣
- ③ ㉠, ㉣, ㅁ
- ④ ㉢
- ⑤ ㉢, ㅁ

문 16.

헌법재판에서의 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처분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과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을 비교衡量하여야 한다.
- ② 헌법재판소법은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은 허용될 수 없다.
- ④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자의 면회 횟수를 주 2회로 정하고 있는 「균형법시행령」 규정은 면회에 교도관을 참여시켜 감시를 철저히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면회를 일시 불허함으로써 증거인멸이나 국가기밀누설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한다 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
- ⑤ 국회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제기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는 가처분이 허용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공익사업으로 실정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서 공익성이 인

정되면 공용수용이 허용될 수 있다.

- ㄴ. 공용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공필요’의 의미는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으로 해석된다.
- ㄷ. ‘공공필요’의 요건과 관련한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와 구별되지 않는다.
- ㄹ. 고급골프장 등의 사업과 같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 개발자의 지구개발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 ㅁ. 법률에서 공용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열거하고 있더라도, 이는 공공성 유무를 판단하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인정의 단계에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공공성에 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 | |
|---|---|
| ① $\neg, \sqsubset$ | ② $\sqcup, \sqsubset, \sqsupset$ |
| ③ $\neg, \sqcup, \sqsubset, \sqsupset$ | ④ $\sqcup, \sqsubset, \sqsupset, \sqsupset$ |
| ⑤ $\neg, \sqcup, \sqsubset, \sqsupset, \sqsupset$ | |

문 18.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자신들의 사무 내지 업무와 관련하여 공권력 행사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기본권의 주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 향유능력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인도 법인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③ 국가기관 또는 국가조직의 일부는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므로, 국민 모두의 봉사자로서 공익실현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은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을 인정하였으나, 아직 원시선이 나타나지 않은 초기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주체성을 부정하였다.
- ⑤ 공법인으로서의 성격과 사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의 경우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공법인적 특성이 기본권의 제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문 19.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7. 기본권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보호의무는 궁극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행위를 매개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본

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헌법상 광범위한 방어적 기능을 갖게 되는 기본권의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ㄴ.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 ㄷ. 국가가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곧 생명·신체에 대한 국가의 침해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한다.
- ㄹ.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은 실정화된 기본적 인권에 한정된다.
- ㅁ. 헌법재판소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었다면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다고 판시하였다.

- ① $\neg, \neg, \neg$ ② $\neg, \neg, \neg$
 ③ $\neg, \neg, \neg$ ④ $\neg, \neg$
 ⑤ $\neg, \neg, \neg$

문 20.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이미 종결된 과거의 사실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평가하고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구법에 의하여 보장된 개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거나 지극히 적은 경우일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
- ㉡. 신법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는 달리 입법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 ㉢. 헌법재판소는 수급권자 자신이 종전에 지급받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자에게, 실제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그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자유업종이었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면서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 | | |
|----------------------------------|----------------------------|
| ① $\neg, \vdash$ | ② $\neg, \vdash$ |
| ③ $\vdash, \vdash$ | ④ $\vdash, \vdash, \vdash$ |
| ⑤ $\neg, \vdash, \vdash, \vdash$ | |

문 2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지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를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 ② 일반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계약은 법률에서 그 취소사유나 대부료의 산정방법 등을 정하고 있고, 대부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계약을 부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쟁입찰 시 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위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에 개발주관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규정에 따라 국가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한국형헬기 민군겸용 핵심구성품 개발협약’을 체결한 경우, 위 협약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환율변동 및 물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으로 발행한 초과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다.

문 22.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징계자가 징계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음을 알면서도 퇴직 시에 지급되는 퇴직금 등 급여를 지급받고 5년 이상 그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징계자의 용인으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징계자가 이제 와 그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헌법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시험에서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가 제대군인에 비하여 여성과 장애인,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에 대하여 가하는 차별의 정도는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③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져 행정관행이 되었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이와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 ④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해서 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 어디에도 그 납세고지의 방식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한 규정이 없더라도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관철되어야 한다.
- ⑤ 신뢰보호의 원칙이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충돌되는 경우에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이 우선한다.

문 23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청이 건축허가의 상대방에게 건축허가 당시 부가하였던 조건을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신축공사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그 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 ② 개인적 공권의 부분적 포기는 인정되므로, 구 「국민연금법」상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입자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사용자가 누락된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 미소급 희망각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이는 국민연금가입자격의 부분적 포기로서 유효하다.
- ③ 기속행위 뿐만 아니라 법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그것이 일탈·남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 내에서 행사할 의무가 있고, 이에 상응하여 국민도 행정청에 대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가진다.
- ④ 관계 법령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 의무나 그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조교수는 심사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
- ⑤ 문화재보호법령상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 여부가 문화재청장의 재량에 속하고, 특정 개인이 자신을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개인에게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추가인정에 관하여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문 24.

공물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는 있었지만 아직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는 못한 국유토지도 그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도로확장공사 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또는 도시계획법 또는 도시재개발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에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고, 단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③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

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의 존속기간이 아닌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허가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③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 ④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에 관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이 변경되어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일 수 있다
- ⑤ 부담이 아닌 부관이 부가된 행정행위에 대하여 그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각하된다.

문 28.

선행처분의 하자과 후행처분의 효력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으며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 ③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함을 소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선행행위인 건물철거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 ④ 선행처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후행처분인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도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
- ⑤ 보충역편입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룰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보충역편입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의 효력을 다룰 수 없다.

문 29.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건축법상 신고제에 있어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행정청의 수리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착공신고의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ㄴ. 건축법령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ㄷ.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법령상 건축주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허가권자는 양수인의 대지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유무와 같은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neg$
② $\perp$
③ $\neg, \text{E}$
④ $\perp, \text{E}$
⑤ $\neg, \perp, \text{E}$

문 30.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행정소송 제기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는 처지이므로 위 제3자가 행정심판 청구기간 내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심판청구기간의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 ② 보충역편입처분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근무 중 보충역편입처분을 취소당한 후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이 순차로 내려지자, 원고가 보충역편입처분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공익근무요원 복무중단처분의 취소 및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의 취소청구를 그 소송의 청구취지로 추가한 경우, 추가된 부분의 제소기간은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③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이 발생하여도 그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이 있음을 바로 알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실제로 그 고시 또는 공고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 ④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⑤ 국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있어서 재조사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후속 처분이 내려진 경우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은 이의신청인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

문 31.

행정상 손실보상 또는 수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따름)

-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 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 ② 헌법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제3항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 이러한 하자는 수용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재송기간이 도과한 후 위 하자를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 ⑤ 대법원은, 이주대책은 이른바 생활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였다면 이때 이로부터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 등의 구체적 권리가 이주자에게 직접 발생한다고 본다.

문 32.

「운전병인 군인 甲은 전투훈련 중 같은 부대 소속 군인 丙을 태우고 군용차량을 운전하여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민간인 乙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 丙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자동차손해보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음)

- ㄱ. 丙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족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 현행법상 丙의 유족은 별도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ㄴ. 甲은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ㄷ. 乙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丙의 유족에게 손해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한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甲의 부담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을 청구할 수는 없도록 한다

면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

ㄹ. 乙은 丙의 유족에 대하여 그 손해 중 국가 등이 乙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① ㄱ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문 33.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의결기관인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방법에 관하여 법령에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대표 등을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법령에 위반하여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구성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은 위법하다.
- ②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청은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도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로서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 ④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어도,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⑤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행정절차법령상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문 34.

무효인 행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유·무효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 당해 수소법원은 그 행정처분이 유효로 판단됨을 전제로 하는 판결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그 행정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판결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의 무효임을 확인을 받은 후에야 할 수 있다.
- ㄴ.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면, 그 후행행위인 건축물철거 대집행제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 ㄷ.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행정절차법 조항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무효이다.
- ㄹ. 개별법령에 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이 없는데 기관위임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경우, 이와 같이 무효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한 행정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 ㅁ. 국세기본법령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한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문 35.

甲은 자신의 소유 건물의 3층 부분에 대한 외벽보강공사 및 지붕보수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3층 부분에 무허가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이에 관할 구청장 乙은 무허가증축공사를 중단함과 아울러 무허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무허가증축공사를 계속하여 이를 완공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乙이 甲에게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써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간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ㄴ.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그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 불이

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 특정되어야 한다.

- ㄷ. 乙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따라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중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 ㄹ. 乙이 철거명령과 이를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제고처분을 고지한 후 甲이 불응하자 다시 2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먼저 발송한 계고처분은 2차 계고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甲이 이를 다투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 그 대상으로 삼을 것은 乙이 2차로 발송한 계고처분이다.

- ① ㄱ ② ㄹ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ㄴ, ㄹ

문 36.

甲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청인 乙시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乙은 甲에게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 ① 만약 甲의 건축허가 신청 후 乙의 처분 이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7조제1항이 신설되어 시행된 경우라면,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는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 ② 甲은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을 대상으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 ③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가 보완이 가능한 것임에도 乙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乙은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들어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甲은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
- ⑤ 만약 소방서장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부동의를 하였는데 乙이 甲에게 건축허가를 한 것이더라도 건축허가의 권한은 법령상 乙에게 있으므로 乙의 건축허가는 적법하다.

문 37.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관청의 운전면허대장 등재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의 과세 대상, 손실보상금액의 산정 등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근거하여 무허가건물 정비에 관한 행정상 사무처리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대장으로서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당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지목은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므로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⑤ 토지대장은 부동산등기부의 기초자료로서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토지 소유권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소관청이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문 38.

행정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피고정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모두에서 제1심 변론종결 이전까지 허용된다.
- ②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

- ③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소는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므로 과세관청이 아니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진다.
- ⑤ 노동위원회법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

문 39.

甲은 2020. 11. 6. 乙로부터 A시 소재 B유흥주점의 영업시설 일체를 양도받아, 2020. 12. 2.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甲이 인수하기 전인 2020. 10. 초순, 乙은 청소년인 丙, 丁(당시 각 18세)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에 A시장은 2021. 2. 3. 甲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A시장이 甲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乙의 영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甲에게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② A시장은 甲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할 경우 乙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 ③ A시장의 乙에 대한 영업허가가 대물적 허가이더라도 영업양도 이전에 乙에게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면 그 효과는 甲에게 승계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 ④ 만일 A시장이 2020. 11. 27. 乙에 대하여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하였다면, 甲은 지위승계신고 수리 이전이라도 사실상 양수인으로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 ⑤ 甲, 乙 사이의 영업양도가 무효인 경우, A시장의 지위승계신고 수리가 있는 후라도 乙은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A시장을 상대로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문 40.

甲은 A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서,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은 다음과 같은 공중위생

관리법령에 따라 甲에게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위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처음이고, 위 영업정지처분에 승복할 수가 없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2월의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의료법」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 7] 행정처분기준(제19조관련) II. 개별기준 1. 숙박업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3월	영업장 폐쇄명령

ㄱ.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의 형식인 부령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이므로 위 행정처분기준은 단순히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ㄴ. A시장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로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ㄷ. 甲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법적 성격이 법규명령인지 또는 행정규칙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7]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선행이 있다면 A시장이 甲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